

발간등록번호
76-5370000-000119-14

세계로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GEOJE

2019. 12.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



거 제 시
【차량등록과】

목 차

I. 자동차 신규등록	9
1. 국내 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 개인 단독/공동명의	15
2. 국내 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 법인 명의	17
3. 수입 자동차 신규등록 : 신차 개인 및 법인명의 등록	18
4. 수입 자동차 신규등록 : 해외에서 운행하던 자동차 등록	19
5. 관용자동차 신규등록	20
6. 비법인 단체/종교단체 명의 신규등록	21
7.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23
8. 말소된 자동차의 신규(부활)등록 : 본인 및 타인 명의 등록	25
9. 미성년자 공동명의 신규등록	27
10. 특수제작차 신규등록	28
11. 저공해 자동차 표지(스티커) 발급	29
II. 자동차 이전등록	31
1. 개인 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36
2. 개인 양도·법인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38
3. 법인 양도·개인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40
4. 법인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42
5. 비법인 단체/종교단체 명의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44
6. 영업용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46

7. 증여에 의한 이전등록	47
8.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48
9. 경매·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50
10. 관용차량(공립학교)의 매각에 따른 이전등록	51
11. 사립학교 명의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법인인 경우)	52
12.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53
13. 매매계약서를 소지한 양도인의 신청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54
14. 매매상사의 매매·알선에 의한 이전등록	55

Ⅲ. 자동차 변경등록

1. 법인의 상호 및 주소 변경등록	61
2. 비법인 단체/종교 단체의 대표자,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62
3.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등록	63
4.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등록	65

Ⅳ. 자동차 말소등록

1.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소유자가 신청)	70
2.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폐차업자가 신고)	71
3. 소유자 사망 시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72
4. 자동차 수출 말소등록	73
5.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압류/저당 등록 된 차령초과 자동차)	74
6.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말소등록(차령초과 초과 멸실 자동차)	75
7. 자동차 도난 말소등록	76
8. 자동차 횡령 말소등록	77

- 9.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을 위한 말소등록 78
- 10.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으로 멸실 된 경우 말소등록 79

V.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81

- 1.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신규등록 83
- 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분실/도난 말소 후 부활등록 84
- 3.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말소 후 수출선적 85

VI. 자동차 기타등록 87

-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 훼손, 갱신(녹색→흰색) 89
- 2. 뒷 번호판 규격 변경(짧은 번호판→ 긴 번호판) 재발급 90
- 3. 자동차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91
- 4. 자동차 경정등록 : 등록착오 또는 누락 92

VII. 자동차 저당권 설정·해지등록 93

- 1.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95
- 2.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96
- 3.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97
- 4.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98

VIII. 자동차 제증명 발급 99

- 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101
- 2. 자동차 등록원부(갑·을부) 발급 및 열람 102
- 3. 자동차등록증서(영문) 발급 103

IX. 건설기계등록(신규 · 이전 · 말소 · 저당권 · 압류)	105
1. 국내제작(수입) 건설기계 일반 개인명의 신규등록	107
2. 건설기계 일반 공동명의 신규등록	108
3. 직권말소 및 수출말소 된 건설기계 부활등록	109
4. 개인 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110
5. 개인·법인 간에 의한 이전등록	111
6. 법인 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112
7. 공동명의의 양도 또는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113
8.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주소, 상호, 대여업체, 사용본거지)	114
9. 건설기계 매도인의 변경신고	115
10. 건설기계 등록말소(멸실, 도난, 수출, 폐기)	116
11.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말소)	117
12.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이전·변경	118
13. 건설기계 압류 등록·해제	119
X.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121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123
2.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정기/수시 적성검사	124
3.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재발급	125
XI.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127
1.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교부	129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130
3.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재부착, 재봉인)	131

XII.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133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신규)	135
2.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136
3.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소유권이전)	137
4.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상속)	138
5.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기타)	139
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140
XIII. 차량세무 · 지역개발공채	143
1. 자동차 세율	145
2. 자동차취득세 잔가율	146
3.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147
4.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148
5.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면제대상	149
XIV.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151
XV. 전화번호 안내	213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신규등록

I



신규등록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주의사항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신청절차 및 방법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신규등록

- 신규등록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 반납 지연 과태료 금액 : 3만 원~100만 원**

- 지연기간 10일 이내 : 3만 원
- 지연기간 10일 초과 106일 이내 : 3만 원+매1일마다 1만 원 가산
- 지연기간 107일 이상 : 100만 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 받을 수 있음

■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아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공통서류	추가서류
<p>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p>②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③ 또는 ④에 의해 소유권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p>	<p>③ 신조자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p> <p>④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p> <p>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p> <p>⑥ 자가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인 경우 : 신규검사증명서</p> <p>⑦ 사업용자동차인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p> <p>⑧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p> <p>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안전검사증</p>

※ 비고 : ①의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
- 법인 등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기간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아래의 등록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0조)

말소등록사유	등록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 반품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하는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난당한 자동차를 회수하여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 회수일부터 3개월 이내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기한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 **신규등록 거부사유**

신규등록의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규등록이 거부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9조)

-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자기인증 표시 또는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 사용제한규정에 위반해서 등록하려고 할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고 할 경우
- **미완성 자동차**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국내 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 개인 단독/공동명의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 규칙 제27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시행규칙 제48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 ○ (공동명의 등록 시)자동차 공동명의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율이 다를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 ○ 장애인과 공동명의 등록시(주민등록등본 첨부) ○ (공채/취등록세 감면 대상자)감면자격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국가(독립/참전/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익증 환자 등 ○ (자가용 화물차 신규등록-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증명서 ○ (구급차 신규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병원)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또는 의료기관허가증 - 소방서는 허가서 불필요, 보건소에 ‘구급차 등 운용 신고’ 안내 ○ 소유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제작사 사원의 경우)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70%;"> (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5%; text-align: center;">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 </div> </div>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000원(단, 타 시·도 등록 : 2,500원) ※ 장애인, 유공자 등 감면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장애인, 유공자 등 감면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3만 원 ~ 최고 100만 원 ※ <u>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3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07일 이상 : 최고 100만 원</u>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행허가증 분실 시 : 차주에게 분실사유서 제출 받고, 임시 운행관리 정보 조회 후 신규등록 처리 ○ 공채(수입증지) 감면대상 - 장애인, 국가(독립/참전/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 상세내역은 세무과 문의 - <u>장애인(1~3급), 다자녀가정</u>, 국가(독립/참전/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국내 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 법인 명의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지점일 경우 지점 현황 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단, 대표자가 신고 시 위임장은 생략 가능) - (제작사 사원의 경우)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p> </div> <div style="margin-top: 10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000원(단, 타 시·도 등록 :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3만 원 ~ 최고 10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3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07일 이상 : 최고 10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보험가입 여부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업무용)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수입 자동차 신규등록 : 신차 개인 및 법인명의 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또는 자동차양도증),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교통환경연구원) ○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등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자동차안전검사증 ○ (개인)소유자 신분증 ○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p>※ 대리인 신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개인/법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단, 법인 대표자가 신고 시 위임장은 생략 가능) - (제작사 사원의 경우)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80%;"> (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15%;">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000원(단, 타 시·도 등록 :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3만 원 ~ 최고 10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3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07일 이상 : 최고 10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로부터 양수한 법인은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계산서 중 1부) 제출하여야 매매금액 인정 ○ 제작년월일 : 입항일(딜러 계약서 확인)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수입 자동차 신규등록 : 해외에서 운행하던 자동차 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 ○ <u>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u> ○ <u>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u> ○ <u>자가인증 면제확인서</u> ○ <u>자동차배출가스, 소음인증서(자가인증 면제차량 제외)</u> ○ 소유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p>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b style="color: red;">:등록증 교부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000원(단, 타 시·도 등록 :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b style="color: red;">최소 3만 원 ~ 최고 100만 원 ※ <u>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3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07일 이상 : 최고 100만 원</u>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필증 상의 신고의무자 명의로 자동차등록 가능, 수입면장에 동반가족 명시되어 있을시 동반가족도 등록 가능 ○ 취득액 : 수입신고필증의 부가가치세 과표 (※ 6개월 이내 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관용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지방세법 제124조, 제126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 ○ <u>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u> ○ <u>관용차량정수배정서 또는 차량변경(교체)승인 공문</u> ○ <u>위임장(해당 기관 관인 날인)</u> ○ 신청인 신분증(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 '면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고지서 수령 : 취등록세 '면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처리완료 : 등록증 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수입증지, 취등록세, 수입인지 모두 면제)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3만 원 ~ 최고 100만 원 ※ <u>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3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07일 이상 : 최고 100만 원</u>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는 기관 고유번호로 등록 (예) 소유자 : 거제시장, 등록번호 : 612-83-02518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비법인 단체/종교단체 명의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 ○ <u>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행)</u> ○ <u>정관/회칙/규약/단체설립인가서 중 1개(직인 날인)</u> ○ <u>회의록 또는 결의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구입에 대한 내용, 직인 확인 사항 포함 - 대표자 포함 5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후 도장 날인 (대표자는 인감 날인, 그 외는 일반도장 날인 가능) ○ <u>대표자 인감증명서</u> ○ (종교단체) <u>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확인증명원</u>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단체 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제작사 사원의 경우)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80%;"> (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 </div> <div style="width: 15%; 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div>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000원(단, 타 시·도 등록 :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3만 원 ~ 최고 10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3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07일 이상 : 최고 100만 원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증 표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명칭) : <u>‘단체명(대표:000)’</u> - 주민(법인)등록번호 : <u>‘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u> - 주소 및 사용본거지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상 <u>‘단체 주소’</u> - 자동차 보험 :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여부 확인 - 세부코드 : <u>‘101 일반단체용’</u> ○ 대표자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아파트 셔틀버스 변경신고지연과태료 부과 사례 다수 있음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영업용”(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 ○ 신규허가 또는 증차신고수리공문 또는 대폐필증 ○ (영업용 특수제작차량-고가사다리차 등) 안전검사증, 자동차배출가스/소음인증서,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제작사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 (여객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및 운송가맹사업자) 디지털운행장치 장착확인서 - 1t 이하 화물차, 소형 경형 특수차, 구난형 특수차 면제 ○ (개인) 소유자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법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제작사 사원의 경우)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70%;"> (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5%; text-align: center;">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000원(단, 타 시·도 등록 :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3만 원 ~ 최고 100만 원 ※ <u>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3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07일 이상 : 최고 100만 원</u>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신규·증차는 30일 이내 등록 ○ 적재함 2.5t 이상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설치 증명서 첨부 (교통행정과 화물담당 차고지 담당자 확인 도장) ○ 위·수탁차량(지입차)의 경우 특기사항에 현물출자자 내역 기재 : <u>“위 차량은 000(생년월일)이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u>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 시 : 위수탁계약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 위수탁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양수시)신고수리공문 - 해지 시 :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말소된 자동차의 신규(부활)등록 : 본인 및 타인 명의 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 : 진주, 창원 소재)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도난 말소 차량)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 발행) ○ (번호판 분실 시)분실신고확인원(경찰서 발행) ○ (명의이전 부활 등록 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개인)소유자 신분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법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p> </div> <div style="margin-top: 10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flex-e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000원(단, 타 시·도 등록 :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분실·도난으로 인한 말소차량인 경우 취득등록세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3만 원 ~ 최고 1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3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u> <u>107일 이상 : 최고 100만 원</u>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신고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화물 면허 실효, 교육 목적, 차대번호 상이, 부정 등록 등 : 말소등록일로부터 <u>3개월 이내</u> - <u>반품 말소</u> : 말소등록일로부터 <u>6개월 이내</u> - <u>수출 말소</u> : 말소등록일로부터 <u>9개월 이내</u> - <u>도난/횡령 말소</u> : 자동차 회수일로부터 <u>3개월 이내</u>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5만 원 ~ 최고 5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3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u> <u>55일 이상 : 최고 50만 원</u>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해야함(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3항) →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해지해야 부활등록 가능함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미성년자 공동명의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 ○ 자동차 공동명의동의서 ○ (미성년자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 날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미방문 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법정대리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제작사 사원의 경우)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70%;"> (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5%;">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000원(단, 타 시·도 등록 :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3만 원 ~ 최고 10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3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07일 이상 : 최고 10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기본증명서 상에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친권자, 미지정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 또는 모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특수제작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제작사 인감도장 날인), 세금계산서 ○ 제작사 인감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 시 불필요): 피견인차 불필요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 ○ 자동차안전검사증(원본),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인증생략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번호 확인) ○ (구급차)아래 3가지 중 하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의료기관 허가증 ○ (개인)소유자 신분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법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제작사 사원의 경우)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차량등록과) 서류제출	⇔ (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	⇔ (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	⇔ (은행) 수입인지 구매
	(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			⇔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000원(단, 타 시·도 등록 :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3만 원 ~ 최고 10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3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07일 이상 : 최고 100만 원 			
주의사항	※ 서류 원본 확인, 차대번호 전산과 꼭 대조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저공해 자동차 표지(스티커) 발급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제2015-259호, 제2017-178호 제5호제1항, 제2항 ○ 거제시 환경과-12341(2016.6.2.)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자동차등록증</u> ○ <u>저공해자동차증명서(제작사 발행)</u>-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발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차 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저공해 자동차 ○ <u>수도권 외 지역 발급 : 2013.5.24.이후 등록된 자동차부터 가능</u> ○ 자동차 1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 1매만 교부 가능 - 단, 분실이나 훼손 시 재발급 가능(사유 검토해서 처리)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40%;"> (차량등록과) 서류제출, 친환경차 종합정보 시스템 : 발급가능 여부 확인 </div> <div style="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40%;">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교부 </div> </div>
구분 및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제1종 : 대기오염물질 배출 없는 자동차 (예) 전기자동차 ○ ㄴ제2종 : 일반자동차보다 질소산화물 50% 적게 배출 ○ ㄷ제3종 : 일반자동차보다 질소산화물 25% 적게 배출 ○ 혜택 :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커에 ‘자동차등록번호, 발급번호’ 기재 후 교부 ○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에 발급사항 기재 (예)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20181120-111111, 3종) ○ 상세 문의 :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 055-639-3954)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이 전 등 록 **Ⅱ**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신청자 및 신청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록을 다음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나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 됨) -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대리인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의 경우 :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사망한 해당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은 등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2조1항·3항)

- 1대의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0조)

신청절차

이전등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5조, 제36조)

<이전등록절차>

- 양수인에 의한 신청(일반적인 경우)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신청 서류 제출 → 서류검토 후 이전등록 → 취득등록세 납부, 수입증지, 수입인지 구입 → 자동차등록증 교부

- 양도인에 의한 신청(양수인이 기간 내 이전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신청 서류 제출 → 양수인에게 이전등록할 것을 최고(7일 이상 15일 이내) → 최고기간 내 양수인의 이의제기×, 이전등록 신청× : 등록원부 정리, 등록절차 완료
→ 이전등록사실 통지 : 양도인 및 양수인(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교체 통보)
※ 번호판 교체는 번호변경 되었을 경우에만 해당

-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공매처분 기관에서 등록촉탁서 작성, 등록관청에 촉탁의뢰(등록원인 증명 서류 첨부) → 서류검토 후 이전등록(압류 및 저당권 등록을 말소 후 이전등록 처리) → 취득등록세 납부, 수입증지, 수입인지 구입 → 자동차등록증 교부

<이전등록관련 세금/과태료 납부 의무>

이전등록을 할 경우 취득등록세 및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전등록이나 자동차등록증(재발급 포함)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7조, 제124, 제125조, 제131조, 제132조)

○ 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 2011.7.16.이전 과태료 :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확인 후 이전 가능
- 2011.7.16.이후 과태료 : 과태료 납부·압류 해지 후에만 이전 가능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81조제2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사 유	처벌내용
<p>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p>	<p>(양수인) - 신청 지연기간 10일 이내 : 범칙금 10만 원 - 신청 지연기간 11일 ~ 49일 : 범칙금 10만 원 + 매1일 초과 시 1만 원 추가 - 신청 지연기간 50일 이상 : 범칙금 50만 원 (자동차매매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p>
<p>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p>	<p>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p>

※ 범칙금은 감경 규정 없음, 분납 불가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개인 간의 양도 ·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양도증명서 특약사항에 승계여부 기재 ○ 자동차등록증(차량 주행거리 확인) ○ 양도인(넘겨주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미방문 시)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u>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기재</u> ○ 양수인(받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u> - 신분증 ○ (공동명의로 등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공동명의동의서 ○ (미성년자가 양도·양수인일 경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 날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미방문 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70%;"> (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5%; text-align: center;">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 </div> </div>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단, 타 시·도 등록 :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1만5천원) 및 번호판 제작비 추가
<p>범칙금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신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 지연 범칙금 : 최소 10만 원 ~ 최고 5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10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칙금은 감경규정 없음, 분할납부 불가 ○ <u>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확인, 양수인일 경우 ‘체류기간’ 확인하여 체류기간 경과 시 등록 불가</u> ○ 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7.16.이전 과태료 :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확인 후 이전 가능 - <u>2011.7.16.이후 과태료 : 과태료 납부·압류 해지 후에만 이전 가능</u>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개인 양도 · 법인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양도증명서 특약사항에 승계여부 기재 - 양수하는 법인의 인감 날인 ○ 자동차등록증(차량 주행거리 확인) ○ 양도인(넘겨주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미방문 시)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명 기재 ○ (미성년자가 양도인일 경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 날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미방문 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하는 법인)</u> - <u>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u> - 법인등기사항증명서(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양수 법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 </div> </div>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단, 타 시·도 등록 :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1만5천원) 및 번호판 제작비 추가
<p>범칙금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신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 지연 범칙금 : 최소 10만 원 ~ 최고 50만 원 ※ <u>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10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u>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칙금은 감경규정 없음, 분할납부 불가 ○ <u>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청산인을 지정 받은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이전 및 말소등록</u> ○ 법인의 대표가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7.16.이전 과태료 :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확인 후 이전 가능 - <u>2011.7.16.이후 과태료 : 과태료 납부·압류 해지 후에만 이전 가능</u>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법인 양도 · 개인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양도증명서 특약사항에 승계여부 기재 - 양도하는 법인의 인감 날인 ○ 자동차등록증(차량 주행거리 확인) ○ 양도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수인(받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신분증 ○ (미성년자가 양수인일 경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 날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미방문 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70%;"> (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5%; text-align: center;">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 </div> </div>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단, 타 시·도 등록 :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1만5천원) 및 번호판 제작비 추가
<p>범칙금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신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 지연 범칙금 : 최소 10만 원 ~ 최고 50만 원 ※ <u>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10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u>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칙금은 감경규정 없음, 분할납부 불가 ○ <u>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청산인을 지정 받은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이전 및 말소등록</u> ○ 법인의 대표가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7.16.이전 과태료 :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확인 후 이전 가능 - <u>2011.7.16.이후 과태료 : 과태료 납부·압류 해지 후에만 이전 가능</u>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법인 간의 양도 ·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양도증명서 특약사항에 승계여부 기재 - 양도·양수하는 법인의 인감 날인 ○ 자동차등록증(차량 주행거리 확인) ○ 양도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수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하는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양수 법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70%;"> (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5%; text-align: center;">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단, 타 시·도 등록 :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1만5천원) 및 번호판 제작비 추가

<p>범칙금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신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 지연 범칙금 : 최소 10만 원 ~ 최고 50만 원 ※ <u>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10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u>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칙금은 감경규정 없음, 분할납부 불가 ○ <u>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청산인을 지정 받은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이전 및 말소등록</u> ○ 법인의 대표가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7.16.이전 과태료 :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확인 후 이전 가능 - <u>2011.7.16.이후 과태료 : 과태료 납부·압류 해지 후에만 이전 가능</u>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비법인 단체/종교단체 명의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양도증명서 특약사항에 승계여부 기재 - 양수하는 단체의 직인 날인 ○ 자동차등록증(차량 주행거리 확인) ○ 양도인(넘겨주는 사람)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미방문 시)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 기재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양수하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하는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행) - 정관/회칙/규약 중 1개 - 회의록 또는 결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양도·양수에 대한 결의 내용, 직인 확인 사항 포함 · 대표자 포함 5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후 도장 날인 (대표자는 인감 날인, 그 외는 일반도장 날인 가능) - 대표자 인감증명서(양도:매도용, 양수:일반용) - (종교단체) 소속증명서, 직인확인증명원 ○ (대표자 외)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단체 직인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p>민원처리 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70%;">(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5%;">(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div> </div>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단, 타 시·도 등록 :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1만5천원) 및 번호판 제작비 추가
<p>범칙금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신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 지연 범칙금 : 최소 10만 원 ~ 최고 5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10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칙금은 감경규정 없음, 분할납부 불가 ○ 등록증 표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명칭) : '<u>단체명(대표:000)</u>' - 주민(법인)등록번호 : '<u>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u>' - 주소 및 사용본거지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상 '<u>단체 주소</u>' - 자동차 보험 :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여부 확인 - 세부코드 : '<u>101 일반단체용</u>' ○ 단체 대표자 변경 시 반드시 변경등록 신고토록 안내 ○ <u>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아파트 셔틀버스</u> : 대표자 변경 시 반드시 신고 요망, 과태료 부과 사례 다수 있음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영업용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양도증명서 특약사항에 승계여부 기재 ○ 자동차등록증(차량 주행거리 확인) ○ 자동차 용도변경(대체)신고필증(해당 조합에서 발행) ○ 양도인(넘겨주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미방문 시)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 기재 ○ 양수인(받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단, 타 시·도 등록 :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번호 변경 : 등록면허세(1만5천원) 및 번호판 제작비 추가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 지연 범칙금 : 최소 10만 원 ~ 최고 5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10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경과된 영업용 자동차는 용도변경 불가 : 직권말소대상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증여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차량 주행거리 확인) ○ 증여(공증)증서(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작성) ○ 증여자(넘겨주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 수증자(받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수증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수증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수증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p> </div> <div style="margin-top: 10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단, 타 시·도 등록 :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1만5천원) 및 번호판 제작비 추가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 이전등록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신고 지연 범칙금 : 최소 10만 원 ~ 최고 5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10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차량 주행거리 확인)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로 대체 가능 ○ (상속증명서류 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판결문, 유언에 의한 공증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증명서류 없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포기자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기재, 일반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행방불명일 경우 실종선고 판결문 첨부) · 상속인 :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미방문 시 인감증명서 첨부) ○ 상속인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상속인) ○ (미성년자가 양수인일 경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 날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미방문 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 </div> </div>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단, 타 시·도 등록 : 1,500원) ○ 수입인지 : 없음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1만5천원) 및 번호판 제작비 추가
<p>범칙금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 이전등록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 지연 범칙금 : 최소 10만 원 ~ 최고 5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10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칙금은 감경규정 없음, 분할납부 불가 ○ 민법에 의한 상속순위 : 사망자(피상속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와 직계비속 - 2순위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와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 배우자 단독) - 3순위 :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 혈족 ○ 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7.16.이전 과태료 :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확인 후 이전 가능 - 2011.7.16.이후 과태료 : 과태료 납부·압류 해지 후에만 이전 가능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경매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에서 매각) 경매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 및 매각결정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 공매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 매각결정 통지서 - 등록청구서,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말소등록 촉탁서 ○ 낙찰자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낙찰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낙찰자 미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낙찰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단, 타 시·도 등록 : 1,500원) ○ 수입인지 : 없음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1만5천원) 및 번호판 제작비 추가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공매 이전등록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 지연 범칙금 : 최소 10만 원 ~ 최고 5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10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당 및 압류 말소등록세 영수증 미첨부할 경우 : 1건당 15,000원 말소등록세 부과(저당과 법원 압류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관용차량(공립학교)의 매각에 따른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직인 날인) ○ 자동차등록증(차량 주행거리 확인) ○ 매각결정통보공문 또는 매각결정서 ○ 양수인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80%;"> <p>(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p> <p>-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p> <p>-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p> </div> <div style="width: 15%; 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div>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단, 타 시도 등록 :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1만5천원) 및 번호판 제작비 추가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 등 이전등록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 지연 범칙금 : 최소 10만 원 ~ 최고 5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10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사업학교 명의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법인인 경우)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양도증명서 특약사항에 승계여부 기재 - 법인 인감 날인 ○ 자동차등록증(차량 주행거리 확인) ○ 양도인(전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명원 - 학교법인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양수인(이전 받을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p> </div> <div style="margin-top: 1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24px;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단, 타 시·도 등록 :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1만5천원) 및 번호판 제작비 추가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 지연 범칙금 : 최소 10만 원 ~ 최고 5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10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 차량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원확정판결을 받아 이전하는 경우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차량 주행거리 확인) ○ 소유권 확정 판결문(정보)/ 확정판결 증명원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양도인 신청 시 생략 ○ 양도인 또는 양수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양도인/양수인의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p>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p>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단, 타 시·도 등록 :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1만5천원) 및 번호판 제작비 추가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에 의한 이전등록 신고기한 : 확정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 지연 범칙금 : 최소 10만 원 ~ 최고 5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10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인 신청으로 강제이전하는 경우 : 취득세 양도인이 납부,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이전등록 사실 통지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매매계약을 소지한 양도인의 신청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6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내용증명서(발송확인서 2회) ○ 인우보증서(2인 확인, 보증인 모두의 인감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양도인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양수인에게 7~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권이전 등록할 것을 최고한 후 이전등록 ○ 양수인의 이의신청 및 송달불능 시 강제이전 불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차량등록과) 서류접수 및 최고 : 7~15일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세무과) 세금 고지서 -카드: 세무과 납부 -현금: 은행 납부 ----- (은행)수입인지 구매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양수인에게 등록증 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단, 타 시·도 등록 :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1만5천원) 및 번호판 제작비 추가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은 ‘양수인’에게 부과 ○ 신고 지연 범칙금 : 최소 10만 원 ~ 최고 50만 원 ※ 매매계약일로부터 지연 일수 10일 이내 : 10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면허세는 양도인 납부, 취득세고지서·자동차등록증·소유권 변경 통보 공문을 양수인 주소지로 등기 발송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매매상사의 매매·알선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자동차등록증 ○ (매매상사로 이전등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매매상품용은 보험 가입은 불필요 ○ (개인 명의로 이전등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양수인 신분증(양수인 직접 등록) - 매매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원증, 신분증(매매상사 등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공채)고지서 -카드 : 세무과 납부 -현금 : 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수입인지 구매</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공채 금액 발생 시) : '할인'채권으로 구매 -경상남도 채권 : 은행(시금고)에서 구매 -타 지역 채권 :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에서 구매 (1588-1154)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등록증 교부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단, 타 시·도 등록 :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등록세 : 차종별 부과액 상이(단, 공채 금액 발생 시 별도 납부) ○ 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1만5천원) 및 번호판 제작비 추가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상사 이전등록 신고기한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 지연 범칙금 : (개인) 최소 10만 원 ~ 최고 5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10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 (매매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양수인에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 가능 ○ 휴업 또는 폐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 불가 ○ 자동차매매상사로 이전 시 반드시 세부코드 '매매상품용' 입력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변경등록 Ⅲ



변경등록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변경등록 신청대상 및 면제사유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22조제4항)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명칭)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 **사용본거지란?**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주사무소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변경등록 신청 면제 사유>(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및제3항)

-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 「자동차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

■ 자동차의 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경우(자동차등록령 제24조)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제외) 시도간 변경 시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 변경 필요 시
-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가)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도난)당한 경우
 - 시·도간의 변경등록은 하는 경우로서 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
 -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로 공용차량 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변경등록 신청 의무 위반 시 처벌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호)

- 변경등록 신청 지연 과태료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 : 2만 원, 매3일 초과 시 : 1만 원씩 추가, 신청 지연기간 175일 이상 : 30만 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 받을 수 있음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내용	법인의 상호 및 주소 변경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대표 방문시 위임장 생략 가능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허가차량 : 버스, 택시 등) 교통행정과 변경수리 공문 ○ (등기부 상 주소 이전 없이 본점↔지점, 지점↔지점 변경 시) 자동차 본거지 이전에 대한 내부공문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등록증 재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만5천원 ※ 사용본거지만 변경 : 수입증지 및 등록세 없음 (단, 도를 달리할 경우에는 수입증지는 납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등록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2만 원 ~ 최고 30만 원 ※ <u>지연일수 90일 이내 : 2만 원, 매3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u> <u>175일 이상 : 최고 30만 원</u>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대표자 변경 시 : 변경등록 불필요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내용	비법인 단체/종교 단체의 대표자,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u>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u>(세무서 발행) ○ <u>사실확인원</u>(세무서 발행 : 변경일자 확인용) ○ <u>정관/회칙/규약 중 1개</u> ○ <u>회의록 또는 결의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대표자 변경내용, 직인 확인 사항 포함 - 대표자 포함 5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후 도장 날인 (대표자는 인감 날인, 그 외는 일반도장 날인 가능) ○ <u>대표자 인감증명서</u> ○ <u>(종교단체) 소속증명서, 직인확인증명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직인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등록증 재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만5천원 ※ 사용본거지만 변경 : 수입증지 및 등록세 없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등록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2만 원 ~ 최고 30만 원 ※ <u>지연일수 90일 이내 : 2만 원, 매3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75일 이상 : 최고 30만 원</u>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아파트 셔틀버스</u> : 대표자 변경 시 반드시 신고 요망, 과태료 부과 사례 다수 있음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6조 ○ 자동차등록령 제24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법인, 개인의 인감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변경 사유별 추가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전한 지 60일 이내 변경등록 : 불필요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간의 변경등록 : 불필요 3.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 : 불필요 (예 : 지역번호→전국번호, 앞 숫자2자리→3자리 신 번호체계) 4. 용도변경 차량(영업용→자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대폐필증(원본) 5. 2대 이상 차량 소유자/세대 짝·홀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 신분증, 세대 : 주민등록등본 6. 자동차 번호판 분실/도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실신고 확인서(경찰서 발행) 7. 범죄행위로부터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경찰관서의 장이 확인한 서류 8. 수사상 필요에 의한 범죄수사용 공용차량의 번호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서의 장이 확인한 서류(내부공문 등)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등록증 재교부</div> </div> <p>* 등록증 수령 후 번호판 제작소에 방문, 번호판 교체</p>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만5천원 ○ 번호판제작비 : 번호판 제작소에 납부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용도 변경</u>”에 따른 신고 지연 시에만 아래 과태료 부과 ○ 변경등록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2만 원 ~ 최고 30만 원 ※ <u>지연일수 90일 이내 : 2만 원, 매3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75일 이상 : 최고 30만 원</u>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용도변경 차량(영업용→ 자가용) 번호변경 시 유의사항</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차량 만료일 이전일 것 확인</u> - <u>자동차 보험 가입여부, 차대번호 확인</u> - 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관련 공문번호 기재 ○ <u>2대 이상 차량 소유자/세대 짝·홀수 변경 시 유의사항</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개인(세대) 명의의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한 대라도 짝수, 홀수가 있는 경우에는 번호변경 불가 (예) 자동차 3대 모두 짝수 : 1대 변경 가능(홀수) 자동차 3대 중 2대 짝수, 1대 홀수 : 변경 불가 ○ 자동차 앞 번호판 분실·도난 : 변경 전 번호판 영치여부 사전확인 (영치 번호판은 영치부서에 확인, 체납세 납부 후 수령토록 안내)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법인, 개인의 인감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변경 사유별 추가 확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차종변경(중형화물→소형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호변경등록→기타→04 화물 및 특수 차종변경 선택 저장 - 같은 화물번호대역이므로 번호변경은 없음 2. 공동명의 대표자 변경(지분변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동의서 작성 3. 외국인 국적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초본(외국인번호→주민번호 변경 확인) - 30일 이내 신고 권장하되 지연되어도 과태료 부과 X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등록증 재교부</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만5천원 ※ 공동명의 대표자 변경은 수입증지만 부과(등록면허세 없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특수차종변경</u>”에 따른 신고 지연 시에만 아래 과태료 부과 ○ 변경등록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2만 원 ~ 최고 30만 원 ※ <u>지연일수 90일 이내 : 2만 원, 매3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75일 이상 : 최고 30만 원</u>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말소등록 **IV**



말소등록

사실상 법령상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권에 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 시 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신청”에 의한 말소(자진말소)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제2항, 제7항, 제8항)

- 종류 : 폐차, 반품, 여객자동차 차령초과, 여객·화물자동차 면허 등 실효(취소), 천재지변·교통사고 등 멸실, 수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차령초과), 도난/횡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교육·연구 목적, 전시 등 특수목적, 섬지역 해체차량, SOFA차량 용도폐지 후 이전, 도로 외 사용, 장기 미보유 멸실, 국교부장관의 인정)

“직권”에 의한 말소(직권말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 상기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 받을 수 있음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소유자가 신청]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발행) ○ 소유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d9ead3;">(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d9ead3;">(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d9ead3;">(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d9ead3;">(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차 말소 신고기한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5만 원 ~ 최고 50만 원 ※ <u>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5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5일 이상 : 최고 50만 원</u>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감장치(저공해엔진)자동차(2006. 6. 9. 이후 등록 차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반납확인증명서 첨부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폐차업자가 신고)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5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발행) ○ 폐차업소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원증 또는 위임장 ○ (법인 차량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차 말소 신고기한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5만 원 ~ 최고 10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5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05일 이상 : 최고 10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감장치(저공해엔진)자동차(2006. 6. 9. 이후 등록 차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반납확인 증명서 첨부 ○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소유자 사망 시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발행) ○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로 대체 가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은 인감도장 날인, 상속포기자는 일반 도장 날인 ○ 상속인, 상속포기자 전원의 신분증(사본) ※ (상속인 미방문)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상속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폐차 말소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5만 원 ~ 최고 5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5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5일 이상 : 최고 5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에 의한 상속순위 : 사망자(피상속인) 기준 -1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와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 배우자 단독) 3순위 :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 혈족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수출 말소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제8항, 제11항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6호, 제7호 ○ 자동차등록령 제3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제8조, 제41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차대번호 반드시 기재)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 소유자 신분증(사본) ※ (수출업체 대표 외)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수출업체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이행여부 신고기한 :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5만 원 ~ 최고 5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5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5일 이상 : 최고 5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이행여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불이행 시) 말소등록(폐차) 또는 신규등록(부활) 신청 -(수출 이행 시) 수출이행여부 신고 *구비서류 : 수출이행여부신고서, 수출면장, 말소사실증명서 ※ 단, 2017.1.29.부터 수출이행신고 전산확인 가능 시 신고 불필요 (확인방법)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등록관리-유관기관 연계-수출이행신고 일괄처리내역조회-(수신일자 조절 후)차량번호 조회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압류/저당 등록 된 차령초과 자동차)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제4항, 제5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2항, 제3항, 제4항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령초과 말소 예고통지를 위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입고사실 증명서(폐차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사본) ○ 차령초과 말소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차의뢰서(시 발행),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p>※ 대리인 신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p>민원처리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차량등록과) 예고통지 서류제출</td> <td>⇔</td> <td style="width: 25%;">(차량등록과) 이해관계인 말소예고통지</td> <td>⇔</td> <td style="width: 25%;">(이해관계인) 기한 내(31일)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 실시</td> <td>⇔</td> <td style="width: 25%;">(차량등록과) 권리행사×, 폐차의뢰서 발급/통지</td> </tr> <tr> <td>(차량등록과) 말소등록 서류제출</td> <td>⇔</td> <td>(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td> <td>⇔</td> <td>(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td> <td>⇔</td> <td>(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td> </tr> </table>	(차량등록과) 예고통지 서류제출	⇔	(차량등록과) 이해관계인 말소예고통지	⇔	(이해관계인) 기한 내(31일)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 실시	⇔	(차량등록과) 권리행사×, 폐차의뢰서 발급/통지	(차량등록과) 말소등록 서류제출	⇔	(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	⇔	(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	⇔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
(차량등록과) 예고통지 서류제출	⇔	(차량등록과) 이해관계인 말소예고통지	⇔	(이해관계인) 기한 내(31일)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 실시	⇔	(차량등록과) 권리행사×, 폐차의뢰서 발급/통지									
(차량등록과) 말소등록 서류제출	⇔	(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	⇔	(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	⇔	(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									
<p>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령초과 말소 신고기한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5만 원 ~ 최고 5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5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5일 이상 : 최고 50만 원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기한 : 최대60일(권리행사로 말소증지 요청 시 말소등록 불가) ○ 차령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 및 특수(중형 및 대형)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말소등록(차량초과 초과 멸실 자동차)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확인 신청서, 멸실사유서 - 인우보증확인서(보증인 도장날인) 및 신분증(사본) - 기타 자동차 멸실사실 증명 서류(경찰서/소방서 등의 사고 기록일지(확인서), 보험지급 증명서, 병원 진료기록 등) - 소유자 신분증(사본) ○ 장기 미보유 멸실인정 말소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시청 발행) - 소유자 신분증(사본) <p>※ 대리인 신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멸실신청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최근 3년간 운행이력 확인 (사실조회/범칙금/과태료/ 보험/검사 내역 등 확인)</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통지</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말소등록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div>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기한 : 최대40일 ○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말소등록 신고 요망 :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전부 해지해야 말소등록 가능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도난 말소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제10항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7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7항및제9항, 제34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5호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관할 경찰서 발행 “도난신고확인서”(차량번호 기재) ○ 소유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난말소 부활등록 신고기한 : 자동차 회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1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난말소 자동차 부활등록 시 관할 경찰서의 “도난사실 확인서” 첨부 : 확인서 상에 자동차 회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해당 압류(저당)을 해지하거나 관계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말소(재등록)가능함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횡령 말소등록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제10항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 제7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7항, 제8항, 제9항, 제34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5의2호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관할 경찰서 발행 “사건사고사실확인원”(차량번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피해상황/사건개요/신고내용란에 “횡령”으로 신고+횡령한 자가 특정(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되어 있어야 함 (사건접수번호 명시여부 확인) ○ 소유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p>민원처리 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div> </div> <p>* 말소등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자동차를 횡령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말소 처리됨을 통지한 후 말소 처리</p>
<p>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령말소 부활등록 신고기한 : 자동차 회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10만 원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령말소 자동차 부활등록 시 관할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첨부 : 확인서 상에 자동차 회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해당 압류(저당)을 해지하거나 관계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말소(재등록)가능함

【자동차말소등록】

민원내용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을 위한 말소등록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7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5호, 제9항, 제34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9호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도로 외의 지역 내에서 한정 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 소유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및 소유자 신분증(사본) (법인 :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p>민원처리 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div> </div>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등록 : 과태료 없음 (3개월 이후 재등록 시 : 과태료 10만 원 부과)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학원 도로주행용 차량을 장내기능용으로 전환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서(도로주행용X, 장내기능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 기재) - 대표자 인감증명서, 학원설립허가증, 장내기능용 전환 확인서(경찰서) ○ 피견인자동차(캠핑카 등) 말소등록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약서(특정 토지 상에서 “임시주거용”등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 기재) - 소유자 인감증명서, 연대보증인 신분증(사본) - 한정 사용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등기, 임대차계약서 등) 및 전경사진 1부 ○ 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해당 압류(저당)을 해지하거나 관계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말소(재등록)가능함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천재지변 · 교통사고 · 화재 등으로 멸실 된 경우 말소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7호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7호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사고사실증명서류(경찰서장/소방서장/시장·군수·구청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 소유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법인 :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 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등 말소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5만 원 ~ 최고 5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5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55일 이상 : 최고 5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저당)이 있어도 말소 가능. 단,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만 가능(전손/전파/멸실 차량만 가능)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V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내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조, 제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보험가입증명서(임시용) : 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소유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교부</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8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행번호판 반납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3만 원 ~ 최고 10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3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07일 이상 : 최고 10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임시운행번호판(허가증 포함)은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반납 (신규등록지 관할관청에 반납) ○ 임시운행허가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번호판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 월요일 반납 시 과태료 미부과, 화요일 이후 반납 시 경과 기간만큼 과태료 부과 ○ 동일 차량이 동일한 목적으로 다시 임시운행허가 불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 받을 수 있음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내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분실/도난 말소 후 부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 ○ 자동차회수사실 확인서(관할 경찰서에서 발행) ○ 보험가입증명서(임시용) : 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부활 후 이전등록 시)자동차양도증명서 ○ 소유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소유자의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8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행번호판 반납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3만 원 ~ 최고 10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3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07일 이상 : 최고 10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차량이 동일한 목적으로 다시 임시운행허가 불가 ○ 번호판 반납 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행 기간 내) 전국의 차량등록부서 어디서나 반납 - (임시운행 기간 종료 시) 허가 받은 관할관청에 반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 받을 수 있음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내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말소 후 수출선적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증명용) ○ 수출사실관련 증명서류 ○ 보험가입증명서(임시용) : 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소유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대리인(수입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세무과) 수입증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8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행번호판 반납기한 :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3만 원 ~ 최고 100만 원 ※ 신고 지연일수 10일 이내 : 3만 원, 매1일 초과 시 : 1만 원 추가, 107일 이상 : 최고 10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선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기간 : 20일(철제번호판) ○ 동일 차량이 동일한 목적으로 다시 임시운행허가 불가 ○ 번호판 반납 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행 기간 내) 전국의 차량등록부서 어디서나 반납 - (임시운행 기간 종료 시) 허가 받은 관할관청에 반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 받을 수 있음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기 타 등 록 VI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민원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 훼손, 갱신(녹색→흰색)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1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번호판제작소에 반납)자동차번호판(봉인 포함) 	
민원처리 절차	(차량등록과) 서류제출(서류검토), 등록증에 재발급사항 기재	⇨ (번호판제작소) 번호판 제작 및 교부(부착), 번호판 제작비 수령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호판제작비 : 번호판제작소에 납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식별 곤란 등록번호판(훼손 등)의 재교부(재부착) 위반</u> : 과태료 10만 원 부과 ○ <u>등록번호판 미부착(미봉인) 자동차 운행 금지 위반</u> : 과태료 50만 원~250만 원(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 처벌) ○ <u>등록번호판 가림 또는 그러한 자동차 운행 금지 위반</u> : 과태료 50만 원~250만 원(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 처벌)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전국번호판 단순 색변경(녹색→흰색) : 재발급 신청,</u> <u>지역번호판(녹색)→전국번호판(흰색)변경 : 변경등록으로 처리</u> (지역→전국 변경 시 등록면허세는 면제, 수입증지는 있음) ○ 자동차등록증에 재발급 사유, 규격(길이, 앞/뒤), 개수 기재 교부(예시) 접수인 위에 “훼손, 긴번호판(앞) 1개 [담당 도장날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 받을 수 있음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민원내용	뒷 번호판 규격 변경(짧은 번호판→ 긴 번호판) 재발급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1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u>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확인서</u> : (2018.현재)상동자동차정비연초점 파견 교통안전공단 확인 ○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번호판제작소에 반납)자동차번호판(봉인 포함)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교통안전공단) 규격변경 가능여부 검사, 확인서 교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차량등록과) 서류제출(서류검토), 등록증에 재발급사항 기재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번호판제작소) 번호판 제작 및 교부(부착), 번호판 제작비 수령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호판비 : 번호판제작소에 납부(검사비 별도)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앞 번호판 규격 변경과 뒷 번호판(긴→짧은 번호판)규격변경</u> : 사안별 담당자 자체 판단 후 처리, <u>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u> ○ <u>규격변경확인서 원본은 보관, 사본은 복사하여 민원인 재교부 (민원인이 번호판제작소에 제출)</u> ○ 자동차등록증에 재발급 사유, 규격(길이, 앞/뒤), 개수 기재 교부 		

【자동차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민원내용	자동차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u>자동차에 외부장치가 장착된 사진 제시(핸드폰 사진 가능)</u> :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춘 외부장치만 번호판 발급 가능 <p>〈 발급 요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등록번호판(보조번호판)이 캐리어와 일체형이 되어 분리할 수 없게 봉인이 되어 있어야 함)</u> 2.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3.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4.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해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차량등록과) 서류제출(서류검토), 등록증에 재발급사항 기재, 발급확인서 교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번호판제작소) 번호판 제작 및 교부(부착), 번호판 제작비 수령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호판제작비 : 1만 원(번호판 제작소에 납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등록번호판 가림 또는 그러한 자동차 운행 금지 위반</u> : 과태료 50만 원~250만 원(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 처벌)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 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차량등록부서에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장치를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등록 시, 말소등록 시 - 이전등록 시(외부장치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 경정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경정등록 : 등록착오 또는 누락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대번호가 상이한 경우 : 탁본 1부(또는 사진) - 등록 착오에 의한 경우 : 신규등록관청의 자동차제작증 확인 또는 제작회사의 경정 요청서류 - 경정사항 : 주소, 성명(명칭), 차명, 제원, 원동기형식 등 ○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신고 시 사용인감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200px;"> (차량등록과) 서류제출, 서류검토 후 처리완료 </div> <div style="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200px;"> (차량등록과) 민원인 요청 시 관련서류 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대번호와 제원관리번호 확인 요망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자동차 저당 등록 **VII**



【자동차 저당권 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제3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당권자(채권자) : 도장 또는 서명 - 저당권설정자(차주) 및 채무자 :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 <u>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유자 방문 시 신분증</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 <u>법인인감증명서</u> - 비법인 : <u>회의록 또는 결의서(저당 설정에 대한 내용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u> ○ 자동차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위임장(소유자 인감/직인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u>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설정금액의 4/1000 ○ 등록면허세 : 설정금액의 2/1000 (환산액이 15천원 초과 : 해당금액, 15천원 이하 : 15,000원 부과)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 근저당설정계약서 수정이 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당권자, 설정자, 채무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 <u>서명은 본인 방문시에만 가능(미방문 시 반드시 도장 날인)</u>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증서 ○ 근저당설정 계약서(분실 시 근저당설정 분실확인서) ○ <u>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저당권자 방문 시 신분증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신고 시 사용인감계)</u> ○ 자동차등록증 ○ (채무이행 되었으나 저당권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때)아래 둘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 등본 -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위임장(저당권자 인감 날인)</u>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말소) : 15,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부기로써 말소등록이 가능함 ○ <u>서명은 본인 방문시에만 가능(미방문 시 반드시 도장 날인)</u>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

민원내용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 ○ <u>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저당권자 방문 시 신분증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신고 시 사용인감계)</u> ○ <u>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방문시 신분증</u>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저당권자/소유자 모두,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변경) : 15,000원
과태료 부과	○ 없음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부기로서 변경등록이 가능함 ○ <u>서명은 본인 방문시에만 가능(미방문 시 반드시 도장 날인)</u>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 저당권자가 바뀌는 경우

민원내용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u>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저당권자 방문 시 신분증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신고 시 사용인감계)</u> ○ <u>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유자 방문 시 신분증</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 <u>법인인감증명서</u> - 비법인 : <u>회의록, 대표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u> ○ 자동차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저당권자/소유자 모두,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p>민원처리 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세금 고지서 발행 -카드:세무과 납부 -현금: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div> </div>
<p>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설정금액의 4/1000 ○ 등록면허세 : 설정금액의 2/1000 (환산액이 15천원 초과 : 해당금액, 15천원 이하 : 15,000원 부과)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자동차 제증명 발급

VIII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민원내용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개인 : 소유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법인대표 신청 시 위임장 생략 가능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신청서 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처리완료 : 자동차등록증 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700원 ※ 단, 기재사항 부족 재발급은 수수료 면제(등록증 반납 확인)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체납 시 등록증 재발급 불가(지방세법 제131조) : 체납 세금 납부 독려 후 재발급 처리 ○ 공동명의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시 소유자 전원의 확인 필요 : 공동명의자 중 1인만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분증(사본 가능)을 제시하거나 위임장 필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민원내용	자동차 등록원부(갑부/을부) 발급 및 열람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서 ※ 단, 소유자 본인은 신분증 제시 시 신청서 작성 불필요 ○ 신청인 신분증
<p>민원처리 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신청서 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등록원부 교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세무과) 수입증지</div> </div>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발급)300원, (열람)100원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인적사항과 자동차등록번호, 사용본거지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 발급(열람) 가능. 단,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비공개로 발급(열람) ○ 열람은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만 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도 현장 발급 가능 (단, 말소사항 관련 발급은 FAX민원 접수 후 처리 가능)

【자동차등록증서 영문 발급】

민원내용	자동차등록증서(영문) 발급
관련법규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일시반출승인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 반출 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 - 소유자 인적사항 및 등록번호, 반출기간 등 기재 ○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여권 및 국제면허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신청서 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차량등록과) : 등록증서 교부</div> </div>
수수료	○ 없음
과태료 부과	○ 없음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반출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동차등록증서 및 반입인증 서류 필요)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건설기계 등록

- 신규 · 이전 · 말소 · 저당권 · 압류등록 등

IX



【건설기계 신규등록】

민원내용	국내제작(수입) 건설기계 일반 개인명의 신규등록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 건설기계) - 수입업체의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수입 건설기계)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제원표 및 형식승인서, 확인검사증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9종 ○ 영업용으로 등록시 대여신고필증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차대일련번호 각자 압형 3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p>민원처리 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입증지 구입</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의 범위 참조 ○ 구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 등록

【건설기계 신규등록】

민원내용	건설기계 일반 공동명의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공동명의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자 전원 인감증명서 - 공동소유자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등록지 관할 신청 ○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 건설기계) - 수입업체의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수입 건설기계)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 건설기계제원표 및 형식승인서, 확인검사증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용으로 등록시 대여신고필증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차대일련번호 각자 압형 3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본인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입증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고지서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등록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전, 말소 등 재산권행사 관련 신고시 공동소유자 전원 인감날인

【건설기계 부활등록】

민원내용	직권말소 및 수출말소 된 건설기계 부활등록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부활용등록원부 신청서(말소전의 소유자가 신청) ○ 수출업체 포기각서(또는 사유서) ○ 수출업체 인감증명서(위임시 위임장 첨부) ○ 등록말소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적합여부 검사결과통보서 (건설검사소)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용으로 등록시 대여신고필증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차대일련번호 각자 압형 2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p>민원처리 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입증지 구입</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고지서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의 범위참조

【건설기계 이전등록】

민원내용	개인 간의 양도 ·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반드시 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소유자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변경사실 증명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서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수입증지, 체납확인, 고지서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3일 초과시 1만 원 추가, 최고 2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을 영업용으로 등록시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인감증명서, 대여업체관리계약서 ○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등록시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인감증명서 ○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등록시 : 대여업체관리계약서,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이전등록】

민원내용	개인·법인 간에 의한 이전등록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 양도인 - 신분증(본인 방문시), 인감증명서(미방문시)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p>※ 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위임)이 신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p>민원처리 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수입증지, 체납확인, 고지서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 원 <li style="padding-left: 20px;">- 매3일 초과시 1만 원 추가, 최고 20만 원
<p>주의사항</p>	

【건설기계 이전등록】

민원내용	법인 간의 양도 ·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 양도인 - 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 인감도장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수입증지,체납확인, 고지서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 원 - 매3일 초과시 1만 원 추가, 최고 20만 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청산인을 지정 받아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법인명의로 건설기계를 이전등록(양도) 및 말소등록 ○ 법인의 대표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

【건설기계 이전등록】

민원내용	공동명의로 양도 또는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등록증 ○ 양도인일 경우 - 본인 신분증(공동명의로자 전원 인감 날인) ○ 양수인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 대표선임계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공동명의로자 전원 인감날인) ※ 양도·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위임)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출석자의 인감증명서 - 불출석자의 인감도장(양도증명서에 날인된 경우는 불필요)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p>민원처리 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수입증지,체납확인, 고지서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p>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3일 초과시 1만 원 추가, 최고 20만 원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 등록시 대표자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관청에 등록

【건설기계 변경등록】

민원내용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소, 상호, 대여업체, 사용본거지 등)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이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등록 검사증 ○ 건설기계등록번호표(용도변경일 경우) ○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서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건설기계) ○ 대여업체 동의서 (확인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p>민원처리 절차</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 원 <li style="padding-left: 20px;">- 매3일 초과시 1만 원 추가, 최고 20만 원
<p>주의사항</p>	

【건설기계 변경등록】

민원내용	건설기계 매도인의 변경신고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이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원 확정판결 등)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등) ○ 대여업체통지 동의서(확인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p>민원처리 절차</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10px;">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10px;">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10px;">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p>과태료 부과</p>	
<p>주의사항</p>	

【건설기계 말소등록】

민원내용	건설기계 등록말소(멸실, 도난, 수출, 폐기)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9조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의 등록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실(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도난(도난신고접수확인원 : 경찰서장 발행) - 수출(수출신용장 등 수출관련 서류) - 폐기(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 대여업체통지 확인서, 인감증명서(영업용의 경우)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p>민원처리 절차</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접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p>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제3항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20만 원 ○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제2항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100만 원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당 또는 압류사항 있을시 말소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인 통보 및 공고 등 처리절차 이행 후 말소처리 : 저당 3개월, 압류 1개월 경과 후 등록말소 처리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민원내용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말소)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제6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저당권설정 계약서 (등록시) ○ 기존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말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실시 : 계약서분실사유서 ○ 해지증서(저당권 말소시) ○ 인감증명서(등록: 채무자, 말소: 채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채권사업자 상호 변경된 경우: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설정금액의 4/1,000원 ○ 등록세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의 우선순위는 등록의 선후에 의함 ○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 관할청에 등록·말소 신청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민원내용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이전 · 변경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저당권이전등록(변경) 신청서 ○ 건설기계저당권이전계약서 ○ 기존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실시 : 계약서분실사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확정판결정보 등 ○ 인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입증지 구입</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등록원부 조회</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변경시 - 1,000원 / 이전시 - 설정금액의 4/1,000원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의 우선순위는 등록의 선후에 의함

【건설기계 압류등록】

민원내용	건설기계 압류 등록 · 해제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4조 ○ 국세징수법 제58조, 제59조
<p>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에 대한 조세채납처분 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압류하거나 가처분 등록촉탁에 의하여 등록 ○ 등록기관의 촉탁에 의함(처리기한 : 즉시)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등록(해제)촉탁서 ○ 압류등록(해제)조서 ○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한 촉탁서
<p>처리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접수 및 검토 ○ 등록원부조회 및 전산등록
<p>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p>과태료 부과</p>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등록촉탁의 경우 등록세 납부여부 확인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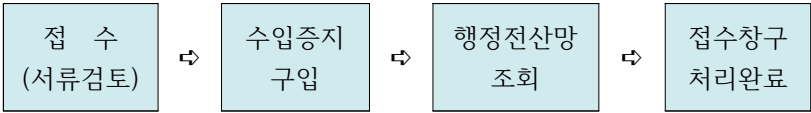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민원내용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 ○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 6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2매 ○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3톤 미만의 지게차는 필수) ○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발급한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접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구입 ⇨ 행정전산망 조회 ⇨ 면허증 제작,교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div>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접수 및 검토 ○ 행정전산망(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조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제작교부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5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증 발급 신청 또는 교부시 본인 확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민원내용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정기/수시 적성검사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및제82조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6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2매 ○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발급한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 신분증
<p>민원처리 절차</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수입증지 구입</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행정전산망 조회</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면허증 제작,교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접수 및 검토 ○ 행정전산망(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조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제작교부
<p>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500원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최고 50만 원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 취소 처분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증 발급 신청 또는 교부 시 본인 확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민원내용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재발급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 ○ 6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추가발급·훼손의 경우)
민원처리 절차	 <pre> graph LR A[접수 (서류검토)] --> B[수입증지 구입] B --> C[행정전산망 조회] C --> D[접수창구 처리완료] </pre>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접수 및 검토 ○ 행정전산망(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조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제작 교부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500원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증발급 신청 또는 교부시 본인확인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건설기계 제증명발급

XI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민원내용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교부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p>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민원 FAX(면·동에서 신청 가능)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등록원부발급(열람) 신청서 ○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p>수 수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제시 : 발급 500 원/건, 열람 100 원/건 ○ 전자민원 신청은 무료
<p>이해관계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권, 저당권, 압류 등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 자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양수 받은 자 ○ 조세부과 기타 처분을 하는 행정관청 ○ 법 제21조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 ○ 당해 건설기계가 소속된 영 13조에 의한 일반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대표자 ○ 은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동법 제5조 특례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 등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p>민원내용</p>	<p>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p>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1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p>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신분증, 도장
<p>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500원
<p>주의사항</p>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p>민원내용</p>	<p>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재부착, 재봉인)</p>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p>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할 때 신청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 등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번호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분실신고 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p>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p>주의사항</p>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XII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내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신규)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소유자 본인 신청 시) ○ 법인 - 법인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경우)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수입한 경우) ○ 대리인 위임 시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2px;">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2px;">사용신고 전산입력</div>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2px;">취·등록세 납부</div>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2px;">사용신고 필증납부</div>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2px;">번호판 봉인교부</div> </div>
수 수 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84조 제2항18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의사항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내용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 재사용 신고)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양도증명서 (양도인 도장날인, 사용폐지 당시 소유자가 재등록 시는 제외)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양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 미 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p>민원처리 절차</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사용신고 전산입력</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취·등록세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사용신고 필증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번호판 봉인교부</div> </div>
<p>수 수 료</p>	
<p>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84조 제2항18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p>주의사항</p>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소유권이전)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 시 - 도장날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시 : 신분증 - 미 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변경신고 전산입력</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취·등록세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용신고 필증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번호판+ 봉인교부</div> </div>
수 수 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변경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상속)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상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시 : 신분증 - 미 방문 시 :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및 인감도장(본인서명확인서는 서명날인 가능) ○ 상속인 명의의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상속포기서 : 상속 포기 자는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변경신고 전산입력</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취·등록세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용신고 필증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번호판+ 봉인교부</div> </div>
수수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변경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기타)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법인 - 법인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이륜자동차 소유자(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 신고의무 면제 ⇒ 기존 번호변경 없이 사용가능 ※ 단, 소유권 이전 시 번호변경 원할 시 신청 가능 ※ 사업자·법인의 경우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의무 대상 ⇒ 30일 이내이며, 신고지연 시 과태료 부과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변경신고 전산입력</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취·등록세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용신고 필증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번호판+ 봉인교부</div> </div>
수수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의사항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민원내용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 반납(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 신분증 ○ 법인 - 법인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위임장(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10px;">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10px;">사용폐지 전산입력</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사용폐지 증명발급</div> </div>
수 수 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시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 이내 ~ 18일 : 6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일 이후 : 100,000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는 법정 폐차제도 없음 ○ 분실도난에 의한 사용폐지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실도난의 경우 자동차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 후 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함, - 분실,도난당한 자동차를 찾았을 경우 사용폐지증명서로 사용 신고 처리함. 취득세는 미부과 ○ 배기량 125cc초과인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후 폐지

【이륜자동차 신고대상 제외(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운행 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전동 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속도 : 8 ~ 10km/h
어린이용 자동차		속도 : 7km/h
전기보드		속도 : 20km/h
미니바이크		속도 “ 40km/h
모터보드		배기량 : 49cc 속 도 : 40km/h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용도 : 산악용, 농촌용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차동장치 : 회전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차량세무 · 지역개발공채

XIII



 **자동차 세율 (지방세법 제12조)**

구분(원인별)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 고
소유권	비영업용 승용차	경차 이외	7.0%	5.0%
		경차	4.0%	2.0%
	승용차 외	비영업용 (경차 : 4%)	5.0% (경차 : 4%)	3.0% (경차 : 2%)
		영업용	4.0%	2.0%
	이륜차	125cc 초과	5.0%	3.0%
		125cc 이하	2.0%	-
기타차량		2.0%	-	
기계장비 (비등록대상)		3.0% (2.0%)	1.0%	리스이용자
저당권 등록 및 이전		-	0.2%	채권금액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지입차량 등록			1만 5천원	
그 밖의 등록	차량	-	1만 5천원	
	기계장비	-	1만 원	

※ 경형 승용(1000cc 미만)

-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서 50만 원 공제
- 경형 승합 / 화물차(1000cc 미만) : 취득세 면제

자동차취득세 잔가을

1)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을 (2019년)

구분	내용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	국산	15년	0.802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외산	15년	0.817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91	0.158	0.130	0.108	0.089	0.074	0.061	0.050
승합	15년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09	0.175	0.146	0.122	0.102	0.085	0.075	0.060	
화물	15년	0.778	0.726	0.609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09	0.175	0.146	0.122	0.085	0.072	0.060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을 (2019년)

차종	용도	내용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승용자동차	영업용	4년	0.708	0.562	0.316	0.178	0.100	-	-
승합자동차	영업용	6년	0.703	0.562	1.464	0.316	0.215	0.147	0.100
화물자동차	영업용	6년	0.703	0.562	1.464	0.316	0.215	0.147	0.100
이륜자동차	영업 및 비영업용	6년	0.703	0.562	1.464	0.316	0.215	0.147	0.100

※ 잔가을 :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를

※ 경과연수 :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연도말(12.31일 기준) 시점에서 차량의 사용연수

- 2019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18년 제작 : 경과연수 1년 적용
- 2017년 제작 : 경과연수 2년 적용

시가표준액 산출 예시

시가표준액 산출예시(1)

- 차량(기종) : 쏘렌토 XMF75DB-S(비영업용 국산 승용)
- 기준가격 : 27,807천원
- 제작연도 : 2015년도 (잔가율 0.437)
- 시가표준액 : 27,807천원 × 0.437 = 12,151천원

시가표준액 산출예시(2)

- 차량(기종) : 프라이드 DEH33P-H-S(비영업용 국산 승용)
- 기준가격 : 12,495천원
- 제작연도 : 2011년도 (잔가율 0.221)
- 시가표준액 : 12,495천원 × 0.221 = 2,761천원

시가표준액 산출예시(3)

- 차량(기종) : BMW 730d KM(비영업용 외산 승용)
- 기준가격 : 35,420천원
- 제작연도 : 2017년도 (잔가율 0.605)
- 시가표준액 : 35,420천원 × 0.605 = 21,429천원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 신규등록(비사업용) 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구분	매입대상		매입기준 (취득세 과세표준액 기준)
승용	일반	1500cc 미만	면제
		1500cc이상 ~ 2000cc미만	4%
		2000cc 이상	5%
	RV	5인승	4%
		7~10인승	390,000원
승합	11인승		1.5%
화물 (특수)	0.6톤 이상		

※ 영업용 자동차, 전기차 신규등록 : 공채 면제

※ RV(Recreational Vehicle) : 레저용 차량

(예) 카니발, 스타렉스, 쏘렌토, 펠리세이드 등등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

구 분	매입 면제대상 및 내용
1. 매입 의무 면제 기관	<p>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p> <p>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p> <p>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p> <p>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환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p> <p>바. 「민법」, 「상법」 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방채 매입 의무만을 면제 한다)</p> <p>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p> <p>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p>
2. 매입 의무 면제 대상	<p>가. 중고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이전 등록</p> <p>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하며,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차량 및 중기의 대체 취득(교환취득 포함) 시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채 매출(「지방채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92조 적용대상에 한함)</p> <p>라.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건설기계 이전 등록</p> <p>마. 주민 직영사업</p> <p>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p> <p>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계약</p> <p>아.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p> <p>자. 효행, 모범가정,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및 장한 시민으로서 지방채 매입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 동안 경상남도지사 표창 또는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을 1회 이상 받은 도민</p> <p>차. 도내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시간 확인서」에 따라 지방채 매입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도민</p> <p>카.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p> <p>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150만 원(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입 면제</p>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XIV



자동차등록증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 종	③ 용 도	
④ 차 명	⑤ 형식 및 모델연도		
⑥ 차 대 번 호	⑦ 원동기형식		
⑧ 사 용 본 거 지			
소유자	⑨ 성명(명칭)	⑩ 주민(법인)등록번호	
	⑪ 주 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 또는 수소인 자동차의 경우 ⑦번란의 '원동기형식' 은 '구동전동기형식' 을 말합니다. 년 월 일			
등록관청명			적인

1. 제 원			
⑫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⑬ 길이	mm	⑭ 너비	mm
⑮ 높이	mm	⑯ 총중량	kg
⑰ 배기량	cc	⑱ 정격출력	Ps/rpm
⑲ 승차정원	명	⑳ 최대적재량	kg
㉑ 기통수	기통	㉒ 연료의 종류	(연비 : km/L)
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배기량(cc)"은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Wh)"을 말합니다. 사용연료의 종류가 수소인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배기량(cc)"은 "연료전지 최고출력(kW)"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g)"을 말합니다.			
2.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㉓ 구분	㉔ 번호판발급일	㉕ 봉인일	㉖ 발급대행자확인
3. 해당권등록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을)를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㉗ 구분(설정 또는 말소)		㉘ 일 자	

4. 검사유효기간					
㉙ 연월일 부터	㉚ 연월일 까지	㉛ 검사시 행장소	㉜ 주행거리	㉝ 검사책임자 확인	㉞ 검사구분
주의사항 : ㉞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비 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 제외):					

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튜닝승인
 -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 이전등록
 -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
 - 사유(폐차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자동차등록증

○○시·도

5. 변경등록사항

㉟ 성명	㉞ 주소	㉟ 등록일자	㉞ 확인

6. 튜닝사항

㉞ 내용	㉟ 검사일자	㉟ 검사책임자확인

7. 기타

㉟ 내 용	㉟ 일자	㉟ 확인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 종		③ 용 도	
④ 차 명		⑤ 형식 및 모델연도			
⑥ 차 대 번 호		⑦ 원동기형식			
⑧ 사 용 본 거 지					
소유자	⑨ 성명(명칭)	⑩ 주민(법인)등록 번호			
	⑪ 주 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등록관청명 적인

○ 저속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운행구역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운행구역 외의 장소에서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5호의2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제 원

⑫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⑬ 길이	mm	⑭ 너비	mm
⑮ 높이	mm	⑯ 총중량	kg
⑰ 축전지용량	Ah	⑱ 정격출력	kW/h
⑲ 승차 정원	명	⑳ 최대적재량	kg
㉑ 축전지정격전압	V	㉒ 1회 충전 주행거리	km

2.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㉓ 구분	㉔ 번호판발급 일	㉕ 봉인일	㉖ 발급대행 자확인

3. 저당권등록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을)를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㉗ 구분(설정 또는 말소)	㉘ 일자

4. 검사유효기간

㉚ 연월 일부터	㉛ 연월 일까지	㉜ 검사시 행장소	㉝ 주행거리	㉞ 검사책 임자확인	㉟ 검사 구분

주의사항 : ㉚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비 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제외):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튜닝승인
 -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 이전등록
 -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
 - 사유(폐차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자동차등록증

○○시·도

5. 변경등록사항

㉟ 성명	㉞ 주소	㉟ 등록일자	㊱ 확인

6. 튜닝사항

㉟ 내용	㉞ 검사일자	㉟ 검사책임자확인

7. 기타		
㉟ 내 용	㉞ 일자	㉟ 확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구)등록 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용도	비사업용 <input type="checkbox"/> 관용 <input type="checkbox"/> 개인용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용 <input type="checkbox"/> 운수사업용 <input type="checkbox"/> 개인택시 <input type="checkbox"/> 개인택시 외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

<p>신청인 제출서류</p>	<p>1. 신조차·수입차</p> <p>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p> <p>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p> <p>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p> <p>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p> <p>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p> <p>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p> <p>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p> <p>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p> <p>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p> <p>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p> <p>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p> <p>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p> <p>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p> <p>사.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p>	<p>수수료 2,0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p>
<p>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p>	<p>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p>	
<p>「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p>	<p>[]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p>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p> <p>[]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p> <p>[]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p>	
<p>※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p>		
<p>유의 사항</p>		
<p>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p> <p>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p> <p>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p>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매매	[]증여	[]촉탁	[]상속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p>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p>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 본거지 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p>
<p>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p>「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p>※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p>		
<p>유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2.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85조제1항)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변경 사항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내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같은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

<p>신청인 제출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p>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같은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p>
<p>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같음할 수 있습니다.) 4.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같음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등록원부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 본거지 변경등록을 같음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로 같음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정동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신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1,300원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3. 휴대폰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 번호		주행거리 km
말소등록의 원인	[]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 예정 [] 도난 [] 횡령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 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	------	---------------

210mm×297mm [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

(뒤쪽)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 서류

말소등록 원인	신청인 제출 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공통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보(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2. 폐차인수증명서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횡령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 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의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유의 사항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폐차의뢰서

문서번호	시행 일시	발급 일시	처리기간	즉시
수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명칭 및 대표자명)		담당(전화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형식		
	차종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의 폐차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폐차인수증명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모델연도	
	차종	차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폐차인수 연월일		년 월 일	
자동차등록증 인수·폐기 여부	인수·폐기하였음 <small>(서명 또는 인)</small>	인수하지 않았음 <small>(서명 또는 인)</small>	
등록번호판 인수·폐기 여부	()개를 인수·폐기하였음 <small>(서명 또는 인)</small>	인수하지 않았음 <small>(서명 또는 인)</small>	
소유자의 말소등록 직접신청 여부	[] 직접 신청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제58조제5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차 의뢰된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인

유의사항

1. 이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을 한 사업장 내에서 발급하되,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3.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아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폐차 사실의 통보)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m²]

■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 번호			
재발급 사유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기타			
분실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입니다.
------	--	--

유의사항

*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 초본

제 호	총 면 중 제 면	
자동차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말소등록일
차 명	차 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용 도
모델연도	색 상	출처구분
최초등록일	세부유형(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제작연월일
		최초 양도연월일
최종소유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고지)		
검사유효기간	등록사항 확인일	
	폐쇄일	

순위번호		사 항 란	주민(법인)등록번호	등록일	접수번호
주등록	부기등록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 · 초본

제	호							총	면	증	제	면
을부번호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가액				원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		
순 위	구 분	사 항 란								등 록 일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												
종 류	자동차번호	설정일	말소일	종 류	자동차번호	설정일	말소일					
폐쇄연월일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발급·열람 대상 자동차	등록 번호(또는 차대 번호)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신청 내용	발급	갑부 []부	을부 []부	
	열람	갑부 []	을부 []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없음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1건당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1건당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유의 사항

1.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 또는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3.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

■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이해관계인	성명(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이해관계인 구분	
발급·열람 대상 자동차	등록 번호(또는 차대 번호)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자동차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 내용	발급	갑부 []부	을부 []부
	열람	갑부 []	을부 []
발급·열람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2항·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1.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1부)해야 합니다.	없음	없음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압류 등록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에 따른 저장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유의 사항

1. 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2. 신청서의 기재 사항 중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 요령

이해관계인 구분 칸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저당권자, 압류채권자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발급사항 <input type="checkbox"/> 앞번호판 <input type="checkbox"/> 뒤번호판 <input type="checkbox"/> 앞·뒤번호판 <input type="checkbox"/> 재봉인				
재발급사유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도지사 확인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 양수인 직접 거래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갑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을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약사항: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른
(뒷면 여백에 붙임)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도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 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6.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m²]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 번호			
계약 당사자	양도인 (갑)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을)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소	주소
자동차 매매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	제 호	제 호
	대 표 자	[직인]	[직인]
	취 급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계약연월일		년	월 일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차종		차명	
차대번호		계약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중도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잔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매매금액	일금 원정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등 록 비: 일금 원정 대행수수료: 일금 원정
매매알선수수료	일금 원정	관리비용	일금 원정
자동차인도일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하고, "을"이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4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해약금 등) ①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갑"이 고지한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갑"이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자동차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고 "갑"은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9조(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10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을 각각 지닌다.

(특약사항):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뒤쪽에 붙임)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 80g/㎡]

유의사항

1.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3.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털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 ("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등록기호)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선박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채권액 []채권최고액 []담보가액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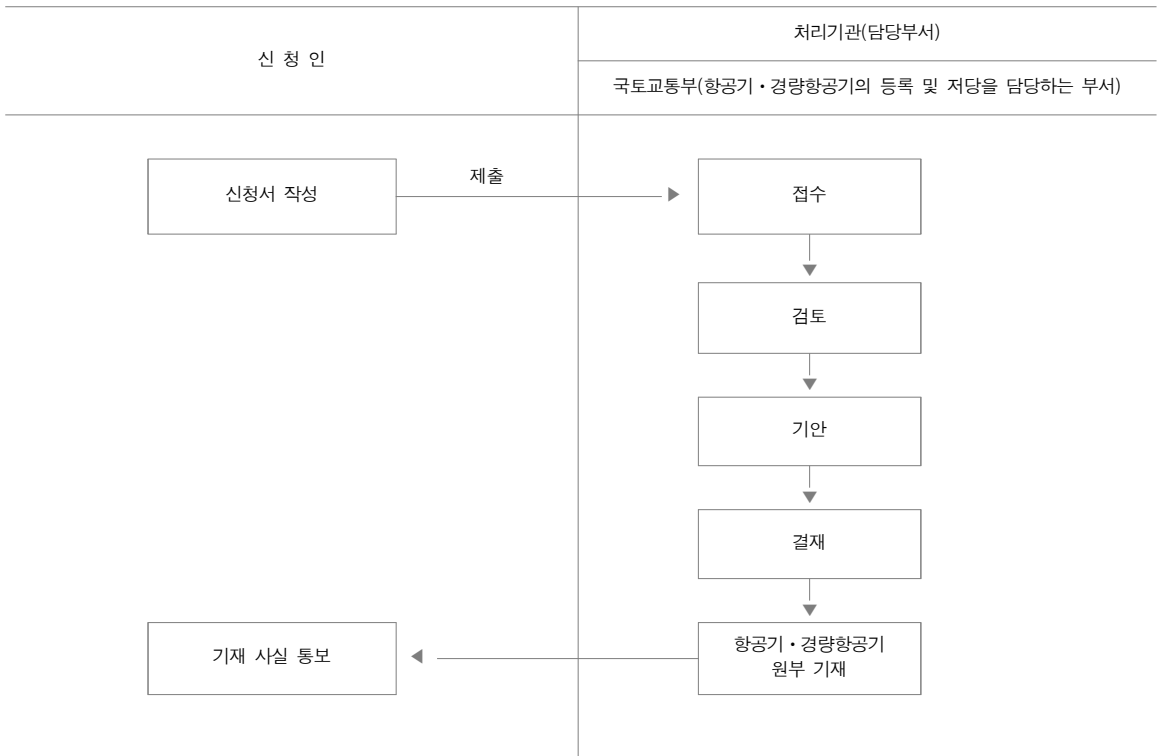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 및 음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번호(등록기호)		음부번호
저당권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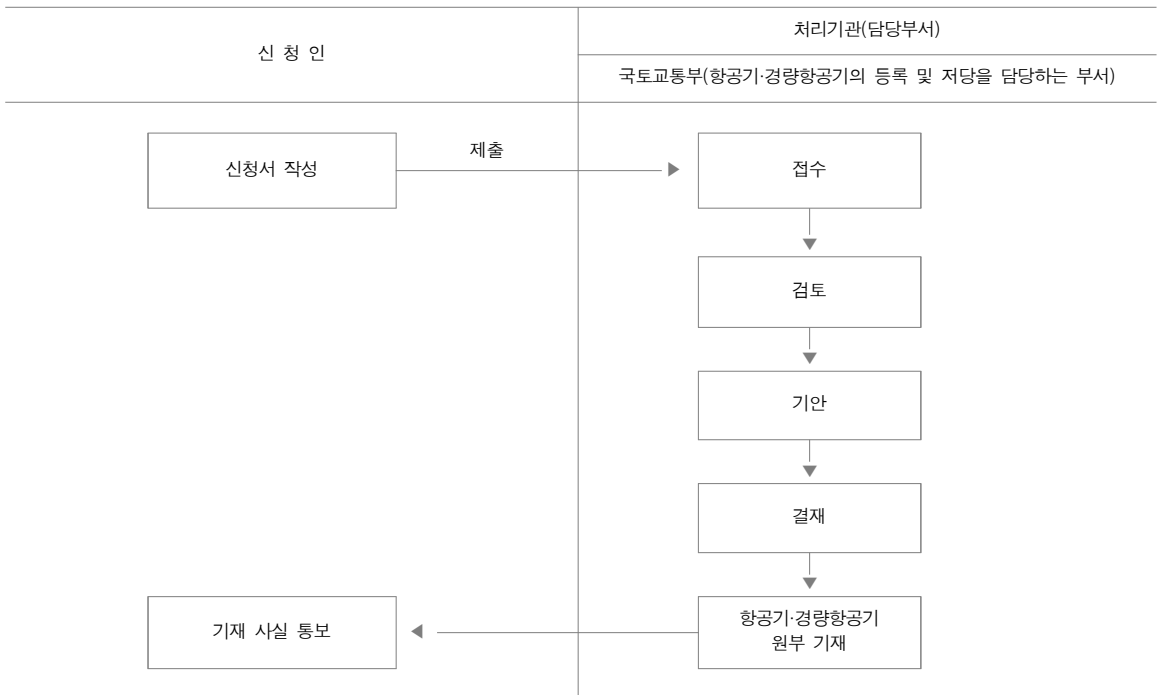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p>수수료</p> <p>「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p>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 및 음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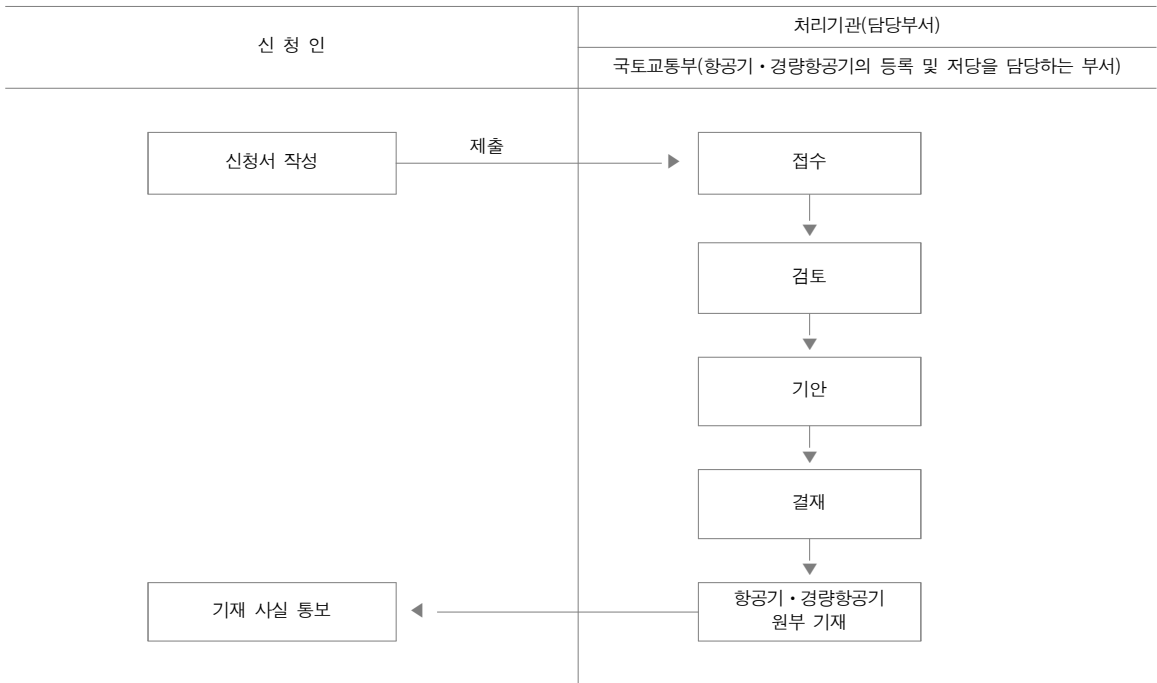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음부번호	
이전 명세		이전 전	이전 후	
저당권자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그 밖의 변경 사항				
<input type="checkbox"/> 양도 채권액 <input type="checkbox"/> 대위변제 채권액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등록기호)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선박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액		(원)	
채권최고액		(원)	
담보가액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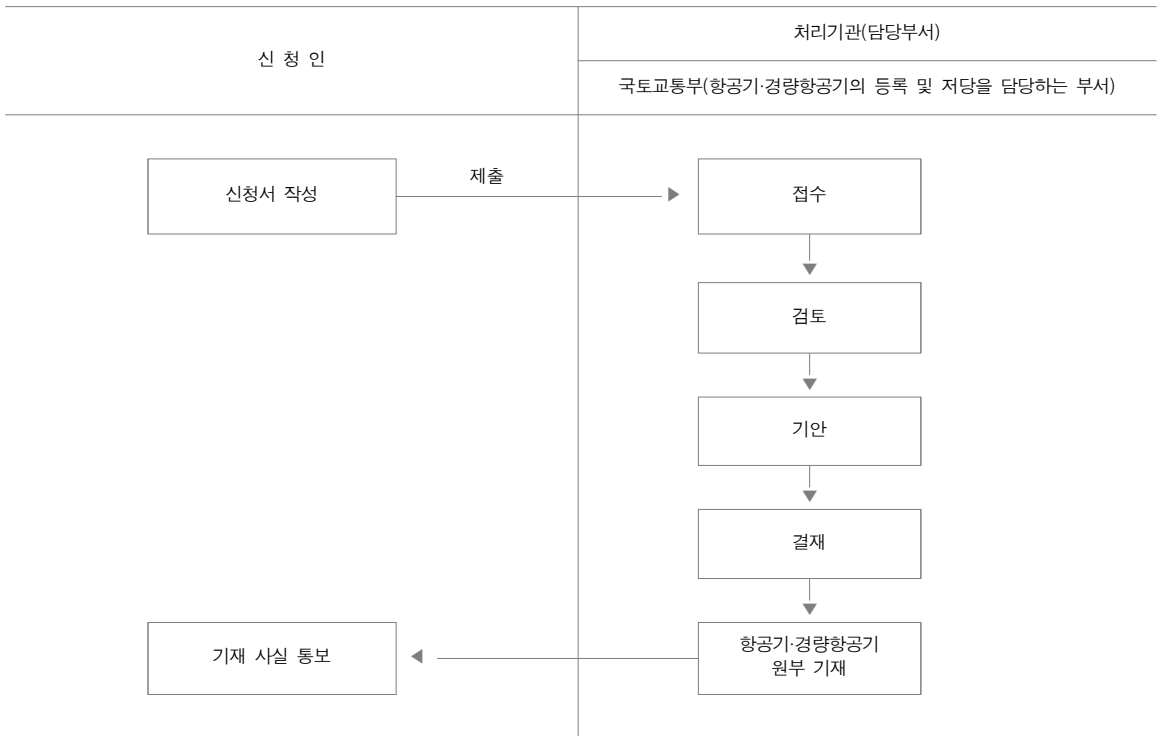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p>수수료</p> <p>「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p>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20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연구 계획서	수수료 1대에 대하여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

유의사항

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신규등록신청·차대번호 표기·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확인 또는 특수한 설비 설치 등을 위한 운행: 40일 이내
 - 라. 제작자 등의 시험·연구 목적의 운행: 2년 이내(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한 경우에는 5년)
 -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의 운행: 5년 이내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호의2서식]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도지사 확인사항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동차 등록 관련 위임장

자 동 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위 임 자 (못 오신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위임하는 사람이 작성】 ○ 수집·이용목적(신규등록, 이전등록,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5년)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규등록, 이전등록 등)이 있을 수 있음		
수 임 자 (오신분)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위임받은 사람이 작성】 ○ 수집·이용목적(신규등록, 이전등록,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5년)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규등록, 이전등록 등)이 있을 수 있음		

상기 자동차(신규, 이전, 말소, 변경, 근저당 설정·이전·변경·말소 및 등록증·번호판 재교부, 기타등록 등) 등록에 따른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일체의 행위를 위 수임자(오신분)에게 위임하며 본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향후 민형사·행정상 책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못 오신분) : (인)

※ 첨부 : 위임자(못 오신분)의 신분증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동명의 동의서

1. 자동차의 표시

등록번호		차 명	
------	--	-----	--

2. 공동명의 등록자 인적사항

대표자 (관리인)	성 명		지분율 %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공동명의자	성 명		지분율 %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공동명의자	성 명		지분율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상기와 같이 공동명으로 등록함에 있어 대표자 _____ 외 _____ 명으로 등록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

공동명의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

공동명의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본인 참석시에만
서명가능

※ 지분율이 상이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륜자동차	차명 (예시 : 데이스타 250)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수수료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없음

유의 사항

-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륜자동차번호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가.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 나.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input type="checkbox"/> 용도폐지 <input type="checkbox"/> 분실·멸실 <input type="checkbox"/> 도난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형식	
	검사유효기간(명령이행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발급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경정사항	[]주소 []성명(명칭) []차명, 제원 []원동기형식 []기타			
	경정 전			
	경정 후			
등록원인 및 일자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등록사항의 경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43조)
2.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

■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자 동 차 제 작 증		
자 동 차 의 표 시	제 원 관 리 (신 고)번호		차대번호	
	차 종		원동기형식	
	차 명(형 식)		모 델 연 도	
	총 중 량		승 차 정 원	
	최대적재량		배기량(기통수)	
	색 상		원동기 마력	
	길이 · 너비 · 높이		제동장치에 석면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사용 안 함
제작연월일	년 월 일	등록번호판의 규 격	× (mm)	
최초 양도연월일	년 월 일	공 급 가 액 (부가세 제외)	원	
양 수 인	성 명 (명 칭)		주민(법인)등록 번호	
	주 소			
양수인의 신규등록 직접 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접 신청 <input type="checkbox"/> 제작자 또는 판매자 등이 신청		
<p>「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를 제작·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제 작 자 또 는 양 도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비 고	<p>※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반품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p>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6.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자동차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정보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비사업용		[]관용	[]개인용	[]법인·단체용	
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외			
참고사항							
※ 불법 운행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전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업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경찰서, 시·도, 시·군·구,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및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등록자료 등을 제공 및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6.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자동차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정보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비사업용		[]관용	[]개인용	[]법인 · 단체용	
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외			
참고사항							
※ 불법 운행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전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업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경찰서, 시·도, 시·군·구,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및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등록자료 등을 제공 및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_____)	주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형식승인번호
제작년도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건설기계등록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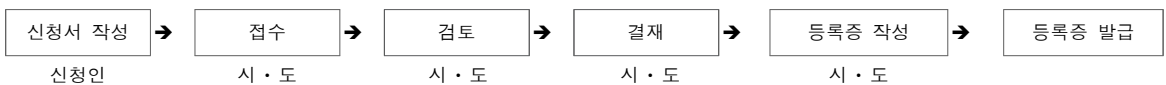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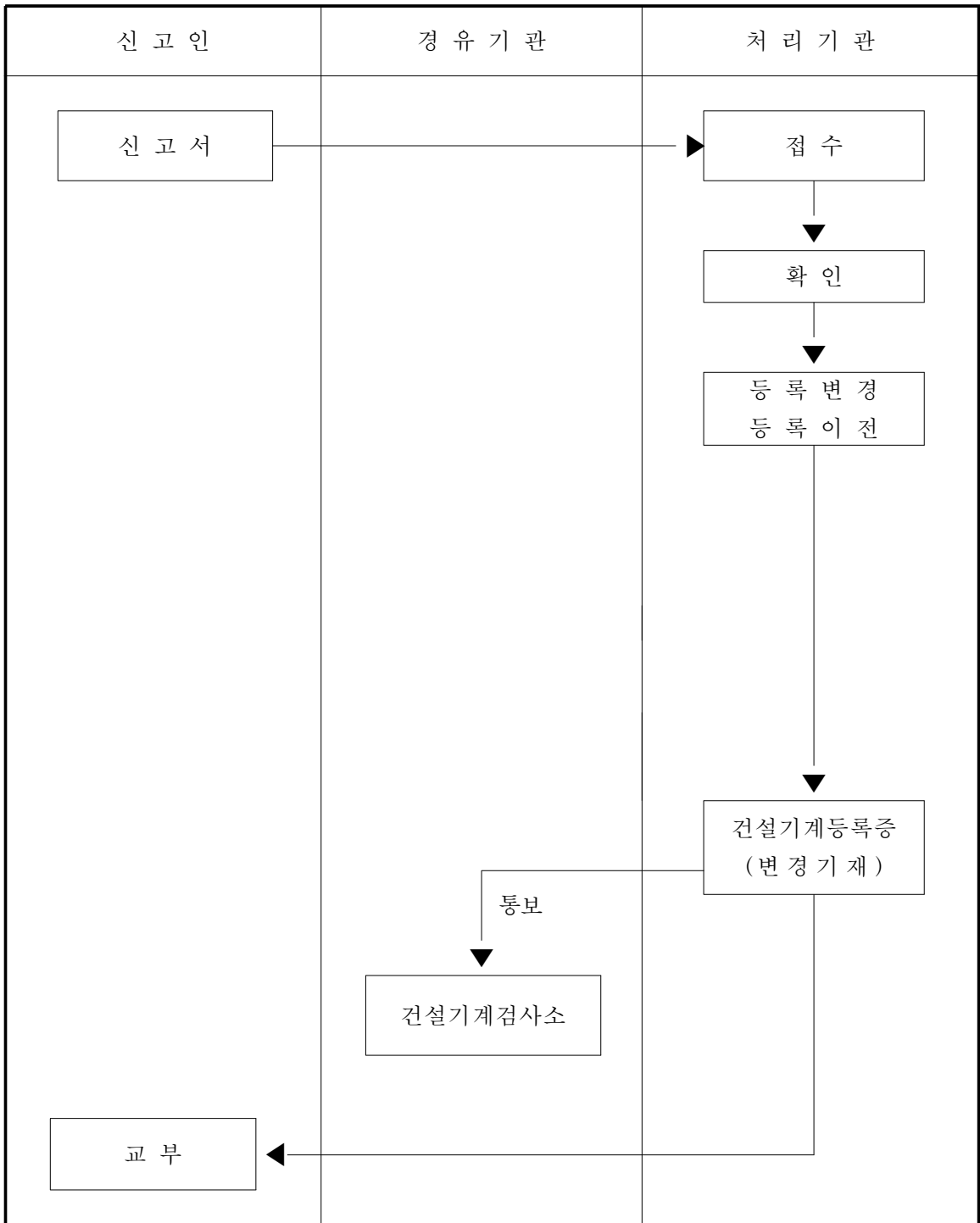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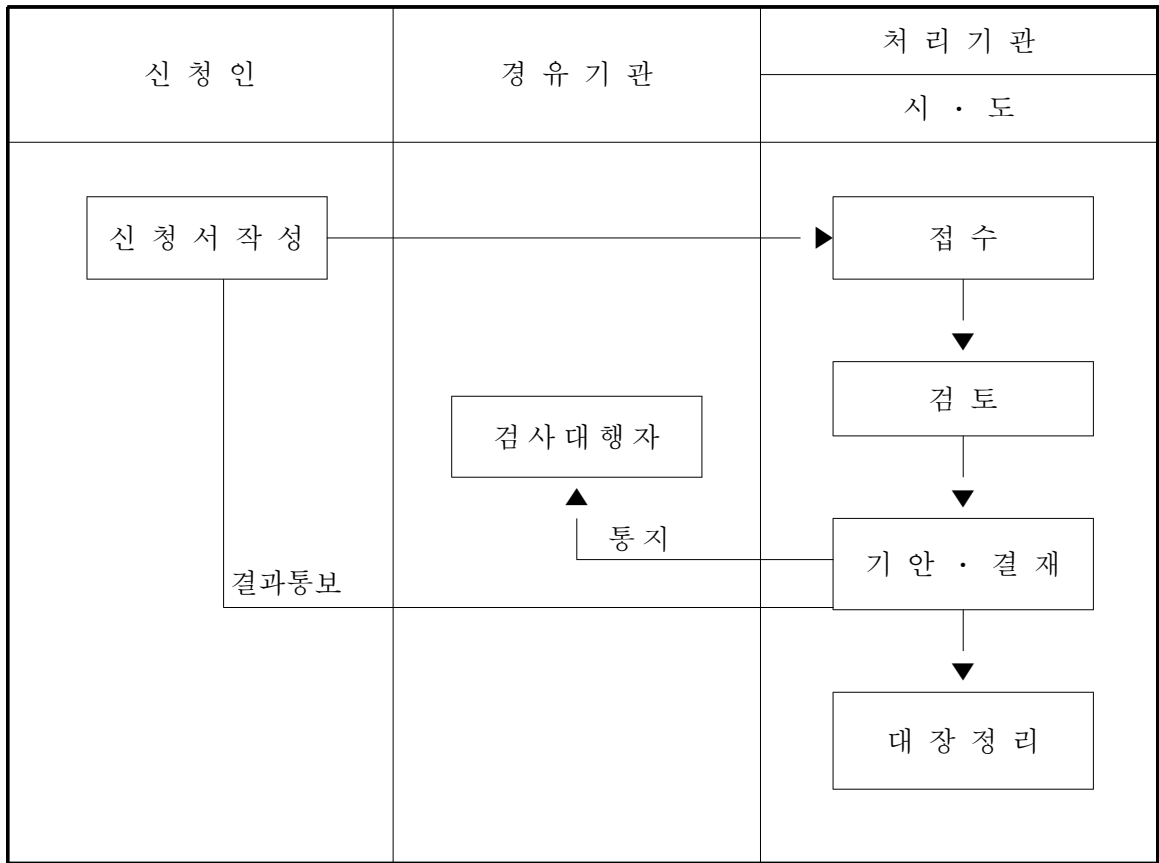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연 명 등 록 자					
연 번	성 명	주민(사업자, 외 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대수	건설기계등록번호	인감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11.7.>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_____)		
등록종별	<input type="checkbox"/> 전기종 종합건설기계정비업 <input type="checkbox"/> 굴삭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input type="checkbox"/> 지게차 종합건설기계정비업 <input type="checkbox"/> 기중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input type="checkbox"/>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 <input type="checkbox"/> 부분건설기계정비업 <input type="checkbox"/> 원동기 전문건설기계정비업 <input type="checkbox"/> 유압 전문건설기계정비업 <input type="checkbox"/> 타워크레인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사업장규모	대지: _____ m ² ,	건물: _____ m ²	
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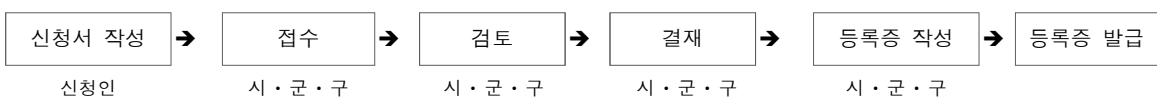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19. 3. 19.>

(앞 쪽)

휴지
건설기계사업의 폐지 신고서
 재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업 종			등록종별	
	등 록 번 호			사업등록일자	
휴·폐지내용	휴지에정기간 부터 까지 (. 년 월)		폐 지 일 자	
	휴지(폐지) 사유 및 범위				
사업재개일자 및 범위					
비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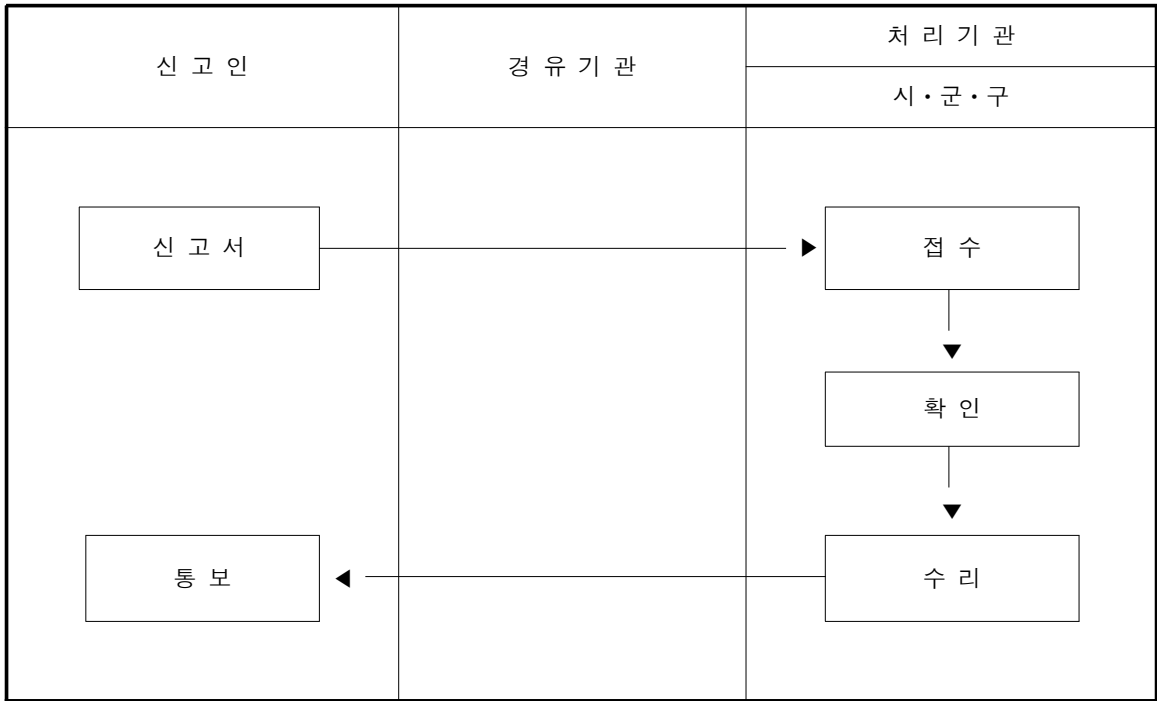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00원 * 사업폐지 신고 수수료는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12. 30.>

[] 발급 []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면허증발급일		
재발급 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잃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2,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신설 2019. 3. 19.>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_____)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번호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에 []아니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수수료 2,500원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적성검사 신청일 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관한 정보(신청인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병력(病歷)신고서 (응시자가 작성)

- 정신질환, 경련성 질환, 마약류, 알콜중독 등 -

(1) 귀하는 정신분열증·정동장애(情動障礙)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명: _____ 치료개시일: _____ 치료종료일: _____ 치료 병원: _____	있음	없음
(2) 귀하는 경련성 질환(뇌전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명: _____ 치료개시일: _____ 치료종료일: _____ 치료 병원: _____	있음	없음
(3) 귀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병명: _____ 치료개시일: _____ 치료종료일: _____ 치료 병원: _____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 일시: _____ 위반 행위: _____ 단속기관: _____	있음	없음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만일 허위사실을 적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1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됩니다.

판정관 의견 [] 적정 []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 (서명 또는 인)

신 체 검 사 서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 생략 가능)

시 력			청 력 (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상지		하지		문진결과	
양안	좌	우	좌	우	적	부	적	부	적	부
그 밖의 의사 소견					검사결과 적격 여부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담당의사 (인) 자르는 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시 력			청 력 (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상지		하지		문진결과		
양안	좌	우	좌	우	적	부	적	부	적	부	
그 밖의 의사 소견					검사결과 적격 여부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전화번호 안내

XV



【거제시 차량등록과 전화번호】

◆ 담당자 및 담당업무 안내

- 대표번호 : 055-639-4551
- 팩스번호 055-639-4529

담당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비고
차량등록담당	자동차신규등록, 저당권설정, 압류, 임시운행, 번호판재교부	639-4554	
	자동차말소, 자동차원부발급, 압류	639-4555	
	자동차이전등록, 등록증 재교부	639-4556	
	건설기계등록	639-4557 639-4553	
차량관리담당	책임보험과태료, 번호판 영치	639-4576	
	자동차 정기검사, 번호판 영치	639-4575	
	건설기계 사업자 관리	639-4573	
특별사법경찰담당	무보험차량 송치	639-4583	
	무단방치차량	639-4584	

【자동차등록관련 업체 연락처】

◆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비고
(주) 비손	강기건	거제시 계룡로5길 11	055-637-0795	

◆ 자동차등록대행 및 폐차업체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담당업무
	직책	성명			
엘지상사	소장	서원배	거제시 동문천로 38 (고현동)	011-572-1333	자동차등록대행
거제폐차장	대표	추교인	거제시 피솔길86 (장평동)	055-632-2400	자동차폐차 건설기계폐차
거제종합폐차장	대표	박태수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601-20 (연초면)	055-636-9905	자동차폐차